

그릇된 인용보도는 피인용인에 대한 명예훼손

연방대법원 1981 년 12 월 1 일 판결

- VIZR 200/80 사건 -

<적용법조>

민법 제 276 조, 823 조 5 항

<판결요지>

1. 피인용인의 글을 잘못 인용보도함으로써 당사자의 평판을 실추케 하는 것은 인격권침해의 구성요소가 된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BVR 797/78=연방헌법재판소판례 54, 208)
2. 인용보도자가 잘못 인용할 때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보도한 사건에 대해 합의제재판소에서 그것을 과실로 인정한 것은 면책사유가 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개요>

1974년 11월 21일에 서독방송연맹(ARD)은 시사뉴스의 저녁방송에서 1974년 11월 10일에 피살된 대법원장의 장례식을 기회로 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그 보도에 관련해서 베를린 자유방송의 해설주간인 제 1 피고와 보도국장인 제 2 피고는 사전에 그 보도문을 읽고서 정당함을 확인한 후에 해설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심하게 그를 비난한 방송해설로 인해서 그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로부터 당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마르크를 요구했다.

지방법원은 그 소송을 기각했으나, 고등법원은 4만마르크의 손해배상을 승인했다. 그러나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원고의 헌법상소원에 대해 기본법 제 1 조 1 항을 대변하는 동법 제 2 조 1 항에 의한 해를 이유로 이 판결을 파기, 연방대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요지>

I

1. 항소법원은 이의제기된 텔레비전 해설은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했고 이 사실에 대

해 원고는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것에 대해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 1 피고(이하 피고라 칭함)는 원고가 공공연하게 법치국가를 경멸하고 폭력 행위자들을 옹호하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른 지식인들과 함께 대법원장인 드랭크만(Drenkmann)씨의 피살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피고가 그 방송해설에서 유일하게 그의 이름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가 마치 개인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는 것이다. 그 같은 비평은 기본법 제 5 조에 의거해서 보호되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해서 불법인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그 해설에서 원고의 발언을 왜곡해서 인용보도했고, 거기에다 또 원고가 여러해전에 바데르

- 마인호프(Baader-Meinhof) 단의 테러와 대항했던 때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고의 이름을 공표함으로써 - 울리케 마인호프(Ulrike Meinhof)라고 표기 - 연쇄효과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원고는 현대사회의 어느 누구도 또한 어떤 사람의 인격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마치 폭력행위자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과 폭력의 세계에 대해 동조하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폭력세계의 배후인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왜곡된 해설을 했다는 것이다. 평가의 정당성에 관한 고려도 없이 보도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그 해설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표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범법자로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법적 절차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객관성과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비난은 법치국가적인 요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주제가 텔레비전에서 논의되어질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근본적인 논평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짧은 해설은 시사 뉴스의 범위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2. 연방대법원은 1978년 5월 30일 판결(1978, 1979 NJW에 게재)에서 이러한 논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가 법치국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비호되고 있는 권력의 부패상을 보았으며 또한 무자비한 방법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는 피고측의 진술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

1966년 부르페탈 극장의 낙성식 때 원고는 식사(소위 세 번째 부르페탈 연설)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권력의 부패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패상은 비열한 방법으로 비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 당시 원고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예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태도를 보정하며 문화국가로서의 금지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그의 견해가 국가의 제도적인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말을 올바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일반대중 또는 일반청중이 이해하기에는 그 뜻이 모호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피고가 바라는 대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인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피고는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발언을, 국가가 무자비한 사냥방법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용한 것도 위와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1972년 1월 10일자 조간지인 슈피겔 지에 게재된 원고의 기사는 사실상 일부 매체에 대하여, 특히 특정한 신문을 대상으로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내용의 경향과 그 취지를 보면 바데르·마인호프 단의 단원들이 국가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끈질긴 추적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원고가 비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인용된 보도 중에 원고가 1968 년부터의 긴급법률안 상정에 대해 법치국가를 「분(糞)」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인용때문에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인용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정할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는 비평의 방법과 시기가 어떻든 간에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전제조건이 되는 피고의 위법적인 인격권침해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3.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모순이라고 판결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피고가 단지 그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기본법 제 5 조 1 항에 의거해서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이 기본법에 보장된 범위에 포함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법성이 없다. 명예를 훼손하는 비평의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원고는 그의 발언이 비평가들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어 인용되지 않도록 기본법 제 1 조 1 항과 동법 제 2 조 1 항에 의해 보장된다. 원고의 발언이 옳게 또는 그르게 인용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평균독자 또는 평균청중의 대표적인 이해의 척도로는 원고의 인격권 보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인용인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이 제 3 자의 다른 색조 내지 경향으로 인해 변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에서 부정확한 인용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그러한 기준이 기본법 제 5 조 1 항에서 충분히 보장되는지 헌법상 고려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비평인의 다의적인 표현들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만을 인용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권인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법 제 5 조 1 항에 의하면 인용문에서 비평가의 의사표명이 문제이지 사실전달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해설은 단지 원고의 명백한 공언이 재현되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원고가 세 번째 부르페탈 연설과 슈피겔지 논설에서 표현하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경우, 이러한 재현방법은 논쟁상에 있어 기본법 제 5 조 1 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원고가 법치국가를 「분(糞)」으로 표현했다는 부당한 주장은 인격권침해와 별개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II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헌법적 이해에서 보면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1. 그 텔레비전은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 해설이 적법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1978년 5월 30일 판결에서 강조했고, 헌법재판소가 그 한도 안에서 인정했던 바와 같이, 우선 첫째로 피고는 원고의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를 해야 한다. 피고는 상고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용문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즉, 그 해설을 들었던 청취자는 원고의 발언을 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용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틀림없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원고에는 애당초 피고의 말을 인용부호로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그대로 읽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했다면, 그는 「뽀 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면」이라는 말을 첨부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로는 상고가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그 해설은 원고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말로 전달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의 해설이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원고의 발언으로 오인하게끔 인식되었다. 그것을 연방헌법재판소 또한 명백히 상술했다. 상고원은 그에 대한 상론을 「구속력 없는 부정적비평」이라고 배척할 수 없다. 그것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주문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말을 해설하면서, 원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것이라는 말을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해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태만함 때문에 원고가 다의적인 표명을 다른 이유로 설사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인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피고의 항의는 우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원고의 인격권이 그러한 식의 인용으로 인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와 침해정도는 단지 피고가 피인용인의 발언에 혹시 다른 내용, 다른 경향 내지는 색조를 가미했는지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원고의 발언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검토기준을 피고의 사회적 명성을 고려하고 또한 그가 평균청취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다르게 해설했는지에 둘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고의 사상을 피력하면서 어떤 어구를 선택했고,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설했는지에 둘 필요가 있다. 단, 검토할 때에는 일반청취자가 피고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와 그들의 선입관에 따라 그 해설을 각각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점은 검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자는 그 말을 일반청취자의 편에 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피인용인의 편에 서서 대변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원고의 말과 피고의 인용문은 서로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항소법원은 확인했다.

1)연방대법원이 이미 이전의 판결에서 상세히 논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법치국가를 「분(糞)」이라고 표현했다는 주장은 피고가 이것을 위해 끌어들었던 1968 년의 원고의 에세이에 근거를 둘수가 없다. 그 에세이에서 다룬 것은 명백하게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일내의 신문에 관한 것이었다.

2)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관한 해설에서, 그의 발언을 이해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원고는 명백하지 못한 양면성을 띤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의 사상피력의 앞뒤 문맥과 그 안에서 표현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릇된 인상을 주게 했다. 피고의 해설을 들은 청취자들은 원고가 마치 테러리스트들을 옹호하고, 테러주의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그 해설프로가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프로의 해설자가 권위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가 컸을 것이다.

2.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스럽게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금전상의 보상을 해야 한다. (st. Rspr., 비교 특히 1977 년 1 월

26 일 연방대법원 판례에 있는 판례개관-VIZR95/70=V-ers R 1971, 465, 466 이하 계속되는 페이지 , 연방헌법재판소 34)

1)원고의 평판에 대한 침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원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항소법원에 의해 근본적으로 심리되었다. 원고가 반론내지는 철회를 통하여 침해의 결과를 충분히 없애 버릴 수도 있다는 상고이유는 지지될 수가 없다.

2)또한 과실과 그 침해의 정도에 따라, 그 침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